

소규모 공동주택 대상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신규 및 교체 신청 접수안내

□ 주요내용

- 지원대상 : 분리수거함 설치를 희망하는 10세대 이상 공동주택
- 지원기준
 - 관리인 반드시 지정 및 지속적 관리 가능한 곳
 - 사유지 내 분리수거함 설치 공간 확보가 가능한 곳
- 신청조건 : 8세대 이상 동의, 관리자 반드시 지정
- 신청방법 : 신청서와 주민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
- 지원내용 : 재활용품 분리수거함, 수거용 비닐(일부지원)
 - 규격: 2000 x 500 x 850mm
 - 품목: 골판지 외 종이류, 비닐류, 유리병/캔류, 플라스틱류, 무색PET류 [총 5분류]

※ 기존 분리수거함(3종)을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5종 분류가 가능한 신규 분리수거함으로 교체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- 교체사유
 - 1) 분리수거함이 노후화되고 크기가 커서 원활한 관리·수거가 어려움
 - 2) 「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」 개정에 따른 **품목별 분리 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거함의 배출품목 세분화**
 - [기존] 3종 1세트(종이류, PET/플라스틱/필름류, 유리병/캔류)
 - [변경] 5종 1세트(골판지 외 종이류, 병/캔류, 비닐류, 플라스틱류, 무색PET류)
- :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('21.12.25)**

(기존) 수거함



재활용 분리수거함 (변경)



【 부서명 :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☎ 560 - 1932 】